

예산총칙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81,363,807	23,440,914
일반회계	675,034,050	20,251,022
특별회계	106,329,757	3,189,893
기타특별회계	106,329,757	3,189,89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554,018	226,621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79,143,737	2,374,312
자활기금운영특별회계	707,934	21,238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917,471	27,524
주민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	128,448	3,853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48,936	4,468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6,102,061	183,062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	640,000	19,200
농업재해복구자금특별회계	2,187	66
수질개선기금사업특별회계	10,984,965	329,54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업 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 "해당사업 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8,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